

## 바오로특전 [Privilegium Paulinum, Pauline Privilege]

### ■ 개요

천주교 비세례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지 않은 상대방이 평화로운 동거생활을 거부할 경우, 비세례 때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

### ■ 본문

이 특전의 기원은 사도 바울로의 《고린토인에게 보내는 편지(전서)》 7장 11~15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이 혼인한 후 그 중 한쪽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 신앙의 혜택을 위하여 혼인 유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신앙의 보존이 혼인 결합보다 우선한다는 이 구절은 교회가 혼인 문제 그리고 혼인과 신앙 사이의 관련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바오로 특전이 교회법으로 법제화된 것은 1199년이지만 혼인 유대의 해소 방법과 그 시간은 1917년 법전에서 처음으로 명백하게 되었다. 바오로 특전을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1. 혼인 당시 세례 받지 않은 남녀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2. 국법이나 자연법상 장애가 없는 유효한 혼인이어야 한다.
3. 당사자 중 한쪽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4. 세례 받지 않은 쪽 배우자가 실제로 또는 윤리적으로 떠나갔어야 한다.

즉 영세자인 당사자는 한 쪽 당사자에게 갈라설 적당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적은 한국에서는 바오로 특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목자들은 이혼한 비신자들이 이혼 후에 다른 비신자와 결혼하였거나 신자와 재혼하려는 경우에 세례 받기 위하여 교리를 배우면서 자신의 과거 이혼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 사목자들은 당사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특전을 얻기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세례 후 즉시 그들의 혼인을 주례한다.

바오로 특전은 세례 받지 않은 쪽 배우자가 떠난 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적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세자는 세례 받지 않은 쪽 배우자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질문의 내용은 상대방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적어도 창조주에 대한 모욕 없이 세례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질문은 입교한 배우자가 영세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질문을 관면 할 수 있다. 질문은 입교자 쪽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가 행하여야 한다.

한국 천주교회는 교구의 모든 사제들에게 일반적인 권한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혼인을 주례하는 본당의 주임 사제나 보좌가 이를 행한다. 질문과 관련하여 헤어진 당사자들은 이미 국가법으로 합의 이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질문을 하여도 대답이 부정적이거나 무익하므로 질문서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면 한다.